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95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문진석 · 김교홍 · 안태준
허영 · 박상혁 · 서미화
한민수 · 김기표 · 김준혁
조정식 · 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

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을 “인권”으로, “위원”을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2명 포함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추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임자는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u> <u>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u> <u>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u>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u>위원</u> 을 <u>선출·지명하여야 한다.</u> ⑤ (생 략) <u><신 설></u> ⑥ ~ ⑧ (생 략) <u><신 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인권</u> ----- ----- -----제5조의2 의 <u>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u> <u>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u>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 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u>헌</u> <u>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u> <u>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u>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u> <u>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u> <u>(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u> <u>둔다.</u> ② <u>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u> <u>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u>

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2명 포함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추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후임자는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② (현행과 같음)